

# 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송의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송의학원(송의여자대학교)의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학교법인 송의학원(송의여자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 고
	건수	금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2	1,984,621	-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-	-	-	
3. 학교 관련	-	-	-	
4. 부속병원 관련	-	-	-	
계	2	1,984,621	-	

2018 년 4 월 24 일

학교법인 송 의 학 원

감 사 남상해 (인)

감 사 김경찬 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3961호)

피감사 기관장



2018년 4월 24일

학교법인 송의학원

이사장 윤순희 (인)

피감사 기관장



2018년 4월 24일

송의여자대학교

총 장 류희진 (인)